

의안 번호	2372	【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		<b>검 토 보 고 서</b>

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12. 2.(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2. 2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18.(수)

## 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운용·관리(안 제3조)
- 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(안 제3조의2)
-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(안 제3조의3)
- 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8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

## 5. 검토의견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,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  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- 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**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-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7.>

##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-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**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   - 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   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  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    - 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      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      - 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    - 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##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

제55조(방재시설) 법 제6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2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·하구둑·제방·호안·수제·보·갑문·수문·수로터널·운하 및 관측시설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
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
5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(取入沓: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)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
6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
7.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댐
8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(防雪: 눈피해 방지)·제설시설, 토사유출·낙석 방지 시설, 공동구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·교량·지하도 및 육교
9.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시설
10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가목2)에 따른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 및 호안
11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5호가목1)에 따른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
12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